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0. 6. 22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
- 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(2000. 6. 19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진흥국장 연 영 석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육성한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건축주 등을 발굴하여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건축상 관련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,
-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조정과 기구개편 관련 변경된 직제명칭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조정

충청북도건축위원회 구성기준 관련조문 정비(안 제4조)

- 행정부지사 → 문화진흥국장

○ 기구개편 관련 변경된 직제명칭 정비

· 충청북도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사와 서기
기준 관련조문 정비(안 제8조, 안 제21조)

- 간사 : 주택과장 → 건축문화과장

- 서기 : 주택과 소속 → 건축문화과 소속

○ 건축상 관련조항 신설(안 제29조)

·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, 공사
시공자, 건축주에게 건축상 시상

· 건축상은 금상, 은상, 동상,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
수여

·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신 익 수)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 이는

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

행정부지사에서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

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을 정비하며
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, 시공자,
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
다만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사유에
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- 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- 5. 토론 요지 : 없음
-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- 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9. 붙임서류 :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행정부지사가”를 “문화진흥국장이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주택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, “주택과”를 “건축문화과”로 한다

제21조제2항중 “주택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, “주택과”를 “건축문화과”로 한다

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29조(건축상)①도지사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② 건축상은 금상, 은상, 동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,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③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4조(구성)①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가</u>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<u>문화진흥국장이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간사 및 서기)①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주택과장이</u> 되고 서기는 <u>주택과</u>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.</p>	<p>제8조(간사 및 서기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<u>건축문화과장이</u> <u>건축문화과</u></p>
<p>제21조(간사 및 서기)①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도 <u>주택과장이</u> 되고, 서기는 <u>주택과</u> 소속의 건축업무를 담당 하는 직원이 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21조(간사 및 서기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 ..<u>건축문화과장</u>.....<u>건축문화과</u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보칙</p> <p>제29조(건축상)①도지사는 지역 건축문화 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 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, 공사시공자,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.</p> <p>② 건축상은 금상, 은상, 동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,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</p> <p>③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